(사)한국도서관협회 정관 일부개정

□ 제안사유

- 창립 63년의 전통과 21세기 한국도서관계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도서관계 대표적 전문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협회를 둘러싼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고, 직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개방적이고도 원칙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회 운영과 외부적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도서관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 협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함.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단법인 정관 예문을 참고하고, 협회의 새로운 역할과 운영방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 정관의 순서 및 문구 등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면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칭(현정관 제2조)과 목적(현정관 제1조)의 순서를 바꾸고, 영문명칭을 추가함.(안제1조,제2조)
-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 60-1번지' 를 '서울특별시' 로 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도메인을 신설함.(안 제3조)
- 사업 중 도서관 관련 통계의 작성을 추가함. 또한 '한국도서관회관' 건립·운영을 사업에 추가하여 향후 회관건립과 관련한 사업추진을 예비함. 한국도서관상, 명예사서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7. 기타 도 서관 용품의 규격화 및 그 보급'을 '7. 도서관 관련 기준 및 규격의 제정·보급' 으로 변경함.(안제4조)
-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임원의 종류에 회장과 부회장을 명시하고 정수도 규정함.(안 제11조 제1항)
- 정기총회의 시기를 3월에서 2월로 변경함.(안 제19조 제2항)
-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현정관 제18조 제2항)을 삭제함.(안제19조)
- 예산편성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에 작성토록 한 것을 현 제도에 맞추어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로 개정하고, 감독청에 제출 의무를 삭제함.(안 제31조)
- 한국도서관회관 건립기금 확충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으로 '도서관발전재단' 을 설치하는 근거조 항을 신설하고, 재단의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 부회 중 특수도서관부회를 전문도서관부회로 수정함.(안 제35조 제4호)
-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권을 총회에서 이사회로 이관함.(안 제42조)
- 공고사항 및 방법과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를 규정한 현 정관 제42조와 제43조를 삭제함.
- 부칙을 3개의 조로 나누어 규정함.(안 부칙제1조, 제2조, 제3조)
- 기타 조항에서 '감독청'을 최근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제 14조, 제40조, 제42조)

자 료 ① (사)한국도서관협회 정관 일부개정

□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안)

○ 위원 :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인(위원장), 사무총장, 기획정책위원장, 회원제도개선특별위원장, 회장이 지명하는 회원 3인(총 7인)

※ 간사:사업진흥부장

○ 활동기한 : 구성시(6월 중)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역할 : 협회 정관 전부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에 보고

※ 이사회는 보고된 개정안을 검토 · 의결한 후 2008년 임시총회 또는 2009년 정기총회에 상정(예정)

〈신·구조문 대조표〉

* 개정사유에서 '감독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정관예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단법인 정관 예문을 참고한 것임을 말함.

현 정 관	개 정 안	개 정 사 유
第2條(명칭) 보 <u>회는</u>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라 한다.	제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명칭과 약 칭은 "Korean Library Association"과 "KLA"로 한다.	제1조와 제2조의 순서를 바꾸어 명칭부터 기술하고, 영문명 칭과 약칭을 추가함.
第1條 목적) 본회는 <u>도서관및독서진흥법</u>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관 진흥과 상호간의 자 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직원의 자질 향상과 공동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도서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관 진흥과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직원의 자질항상 과 공동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4.5. 발효된 새 「도서관 법」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第3億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 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번지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u>서울특별시에 둔다.</u> ② 본회의 인터넷홈페이지 영문도메인은	사무소 주소를 단순하게 표기하고,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 도메인을 신설(제2항)함.

현 정 관	개 정 안	개 정 사 유
第4億(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도서관의 관리 운영기술에 관한 조사연구및 그 실시촉진 2. 기관지 및 도서관과 독서에 관한 자료의편간 3.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지위향상 4. 도서관의 보급 및 설립 운영지도 5. 서지사업 및 양서의 선정보급 6. 독서운동의 추진 및 지도 7. 도서관 용품의 규격화 및 그 보급 8. 도서관 관계 자료실의 설치 9. 각국의 도서관 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제휴 10.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본화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도서관의 관리 운영기술에 관한 조사연구및 그 실시촉진 2. 기관지 및 도서관과 독서에 관한 자료의편간 3.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지위향상 4. 도서관의 보급 및 설립 운영지도 5. 서지사업 및 양서의 선정 보급 6. 독서운동의 추진 및 지도 7. 도서관 관련 기준 및 규격의 제정 · 보급 8. 도서관 관계 자료실의 설치 · 운영 9. 도서관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10. 한국도서관회관의 건립 · 운영 11. 각국의 도서관 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제휴 12. 한국도서관상, 명예사서 등에 관한 사업 13.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회의 목적을 제2조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 변경. 도서관 용품의 규격화 및 그보급을 도서관관련 기준 및 규격의 제정·보급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확대를 도모함(제7호)도서관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을 사업에 추가함(제9호)정관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해 기부자가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도서관회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위해 목적사업으로 규정함(제10호).한국도서관상, 명예사서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제12호)
(산설)	제6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 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 익사업을 할 수 있다.	목적사업 경비충당을 위해 수 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정관예문)
第10條(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21인 이상 30인 이하 감사 2인 ②이사의 종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당연직 이사: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정관 제36조에 의한 각 부회 및정관 제36조에 의한 지구협의회의 장으로 한다. 위촉직 이사: 회장이 위촉하며 10인 이내로 선임한다. ③이사 중 법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당연직이사 중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위촉직이사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이내 3. 이사 2인 이상 30인 이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이사의 종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이사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정관 제36조에 의한 각 부회 및 정관 제 38조에 의한 지구협의회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이사 : 회장이 위촉하며 10인 이내 로 선임한다. ③ (현행과 같음)	회장 및 부회장과 그 정수를 규 정함.(제)항 제1호 내지 제2호) 이사에 회장, 부회장을 포함 함.(제)항 제3호)

현 정 관	개 정 안	개 정 사 유
第12條(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u>감독청의</u>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u>감독청의</u>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하여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u> 인가를 받아 취 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평의원회의 의결 을 거쳐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u> 인가를 받아 야 한다.	감독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변경함.
第13條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회장 및 부회 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u>감독청의</u> 인가 를 받아 취임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 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회장 및 부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u>문화체육관</u> 광부장관의 인기를 받아 취임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감독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변경함
第18條종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되다. ②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 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다. ②정기총회는 연회 2월중에, 임시총회는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다. ③회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 기하여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총회의 구분과 소집으로 구분 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정기총 회 개최월을 3월에서 2월로 변경함.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 함. (정관예문)
第30條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1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 계연도 개시후 2월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 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 한다. 다만 정하기 이전에는 전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에산편성을 현 제도에 맞추어 규정하고, 감독청에 제출하는 과정은 삭제함, 감독규칙에도 이를 강제 조항은 없음.(정관 에문)
〈산설〉	제32조(도서관발전재단) ① 본회는 제4조 제10호 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서관발전재 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사 회의 의결에 따라 따로 정한다.	한국도서관회관 건립을 위한 별도의 조직으로 도서관발전재 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 을 마련함. (제1항) 관련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도 록 함. (제2항)

현 정 관	개 정 안	개 정 사 유
第34條(부회) 본회에 다음의 부회를 두다. 1. 공공도서관부회 2. 대학도서관부회 3. 학교도서관부회 4. 특수도서관부회 5. 기타 필요한 부회	제36조(부회) 본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서관 종류별 부회를 둔다. 1. 공공도서관부회 2. 대학도서관부회 3. 학교도서관부회 4. 전무도서관부회 5. 기타 필요한 부회	부회를 두는 목적을 규정함. 특수도서관을 전문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함.(제4호
第38條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u>문화관광부장관의</u>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 본회를 해산 하 고자 할 때에는 총회 에서 재적회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u>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으로 변경함.
第40億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지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u>문화관광부장관의</u>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지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u>문회체육관광부장관의</u> 허기를 받아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으로 변경함.
第41條(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43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규정으로 정한다.	필요한 규정의 제정의 권한을 총회에서 이사회로 이관함.(정 관예문)
第42條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 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한국일보신 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본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2. 이사회에서 신문공고하기로 의결한 내용	〈삭제〉	현재에는 이같은 공고의 방법 이 필요하지 않아 삭제함.
第43條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삭제〉	지금은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 기를 정관에 규정할 필요가 없 다고 판단하여 삭제하고자 함.

자 료①

현 정 관	개 정 안	개 정 사 유
①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 행한다. 다만,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의 임기 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취임 전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독규칙과 이 정관 제4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함.
까지로 하고,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사무국장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 개정 당시 제34조에 의한 부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협의회 2.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3.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4.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5.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6.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7.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제2조(부회의 종류) 이 정관 제36조에 의한 부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협의회 2.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3.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4.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5.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6.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7.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8.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9.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부회의 종류를 나열함. 새로 가입한 한국시각장애인 도서관협의회를 정관에 새로 명시함. (제9호)
8.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③이 정관 개정 당시 제36조에 의한 지구협의 회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2.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3.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제3조(지구협의회의 종류) 이 정관 제38조에 의한 지구협의회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2. 한국도서관협회 대구 · 경북지구협의회 3. 한국도서관협회 광주 · 전남지구협의회	지구협의회의 종류를 나열함.